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18세 미만의 고등학생(무면허) 등이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렌터카 대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무면허 등 무자격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및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20만을 200만원으로, 2회 위반 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,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,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면허가 없는 자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50만원을 300만원으로, 2회 위반 시 50만원을 400만원으로,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2020.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제2호 버목 및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버.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(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제2항 제6호의2	<u>200</u>	<u>300</u>	<u>500</u>
서.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	법 제94조제2항 제6호의2	<u>300</u>	<u>400</u>	<u>500</u>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19